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131

발의연월일: 2025. 4. 25.

발 의 자:정일영·허성무·장종태

김 윤 • 박지혜 • 유동수

김교흥 · 김문수 · 맹성규

노종면 • 이훈기 • 허종식

정동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해사(海事)사건을 전문으로 전담하는 법원인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74조제1항, 제74조제5항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0123호), 「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2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4조제1항 중 "고등법원에 전속(專屬)한다"를 "해사전문법원에 전속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해사전문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4조(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	제74조(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		
제한)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	제한) ①		
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			
재지를 관할하는 <u>고등법원에</u>	<u>해사전문법원</u>		
전속(專屬)한다.	에 전속한다.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⑤ 제1항에 따른 해사전문법원		
	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		
	<u>상고할 수 있다.</u>		